

설명서

다음 내용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제출 불가.

1. 모든 신청서는 이 별지 내용에 준수한다.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8½ x 11 인치 용지를 따로 이용하여 보완한다 (도안이나 설계도는 11x17 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).
2. 직접 441 4th Street, N.W., Suite 200-S, Washington, D.C. 20001 에 위치한 용도지역사무실에 이 별지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(모든 신청서는 오후 3 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)
3. 용도지역조정위원회(BZA)에 제출하기 전, 모든 신청자는 별지 126 호-용도지역조정위원회 비용 계산지-를 작성 제출하고 BZA 비용명세표-11 DCMR 에 따른 서류 작성비를 지불해야 한다
§3180. (체크나 머니오더는 “DC Treasurer”명으로 지불; 현금 및 신용/직불카드 사용 불가)
4. § 3118.2 에 따라 속달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128 호-속달 검토를 위한 공청회 포기-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
5. **이 신청서를 작성할 시, 모든 신청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(1)장의 원본 및(10)장의 사본 포함:**
 - A. DCRA 의 용도지역행정사무인이 신청자를 BZA 로 안내하는 메모나 별지 135 호-용도지역 자체인증 (인가된 건축자나 변호사 증명 필요).
 - B. DC 인가 측량기사나 DC 측량사무소(Office of Surveyor)가 증명하고 일정한 비율로 현존 및 상정하는 건축물 및 추가 구축 건물 및 시설의 경계선 및 규모를 그린 도면.
 - C. 상정하는 새로운 건축물이나 개조물, 조경/장막, 및 건축 장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건축 설계도 및 입면도. 제출하는 도면이나 설계도는 11 x 17 인치 초과 불가. (도면에 요구되는 내용은 별지 130 호 - 도면, 설계도 및 입면도 필수 사양-참조.)
 - D. 현존이나 미래 시설의 용도 자세하게 설명.
 - E. 신청서가 용도지역규제의 분산 (지역 이나/또한 용도), 특별면제나 다른 요청하는 경감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자세한 내용을 작성 (별지 120 호 부칙- 분산 및 특별면제 신청을 위한 신청자의 입증책임 참조)
 - F. 신청하는 시설 및 토지의 주요 부분을 보여주는 **색상** 영상 3 장. 8½ x 11 인치 크기 초과 불가 (가능하거나 해당되는 경우, 앞면, 뒷면, 옆면 영상).
 - G. 신청하는 토지의 모든 방향 모든 경계선에서 200 피트 내의 토지 소유자들의 성명 및 주소, 및 **그 소유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 스티커 주소 라벨 (2) 장씩**. (비고: 이 정보는 D.C. Department of Tax and Revenue, Tax Assessors, 1101 4th Street, SW – West Building, Washington, D.C. 20024 에서 쉽게 취득 가능)
 - H. 소유자의 신청하는 토지에 위치한 시설을 부분적이나 모두 임대하는 개인의 성명 및 주소.
 - I. 현재 용도 인가된 서류나 점유허가증 사본. 적합이용에서 비적합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인가 서류 사본 첨부.

비고: 모든 신청서는 신청하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획조정실 (OP) 및 지역자문위원회(ANC)로 연결되어 검토 및 권고 절차를 밟는다. 이 보고서는 BZA 결정에 있어 “상당한 영향”을 끼치고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신청서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지역에 위치한 이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고무하고 있다. OP 는 (202) 442-7600 로 연락할 수 있으며 ANC 에 관련 정보는 ANC 사무실 (202) 727-9945 에 연락하여 받아 볼 수 있다.



장애인보호법(ADA)이나 공정주택거래법에 의해 타당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, 별지 155 호-타당한 지원 요청-를 작성



**BEFORE THE BOARD OF ZONING ADJUSTMENT
OF THE DISTRICT OF COLUMBIA**



별지 120 호 - 분산/특별면제 신청서

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 뒷면의 설명서 참고.
달리 표기되지 않은 한 인쇄체나 타자 요망. 모든 정보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.

**§3103.2 - 지역/용도 분산 및 §3104.1 - Title 11 DCMR 특별면제-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
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:**

주소	Square (평방)	Lot No(s). (부지번호)	Zone District(s) (용도지역)	경감종류	
				지역분산 용도분산 특별면제	Title 11 DCMR 해당 섹션 - 용도지역규제에 의한 경감

현재 토지 용도:

상정된 토지 용도:

토지 소유자:

전화번호:

소유자주소:

지역자문위원회 해당지역:

“상정의 누가, 무엇을, 어디서”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락. 공청회 안내 내용으로 대응:

별지 128 호 -속달 검토를 위한 공청회 포기-의 조건에 따라 공청회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 사례가 §3118.2 에 따라 속달검토 명단에 포함되기를 신청한다 (한 항목 선택):
 §200.1 에 따른 공인 노인일용직 및 오동작

나/우리는 위의 내용이 내가/우리가 아는바 사실이고 정확함을 증명한다. 거짓된 이름이나, 주소 및 이 신청서/청원서에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할

일 구금 또는 벌:

공인대리

성명:

이메일:

주소:

***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의 공인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. 공인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대리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
인가하는 소유자 증인서를 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.**

Exhibit No. 1

Case No. _____